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9. 6 선고 2022가단52360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곤

법정대리인(친권자부)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배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지은

변론 종결 2022. 8. 23.

판결 선고 2022.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2.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언니이다.

나. 망인은 원고의 아버지인 B와 2018. 2. 5. 협의이혼을 하고 2018. 2. 13. 피고 주소와 인접한 대전 동구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2021. 2. 25. 사망시까지 피고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모세포종으로 인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 무렵에는 구음장애, 보행장애가 악화된 상태였고, 2020. 2. 19.에는 병세가 악화되어 E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 2021. 2. 25.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2018. 2. 12. 피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과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계 138,001,963원의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수령하였다. 한편 망인이 위 보험계약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는 20,583,045원이다.

바.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채권 2,352,740원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18. 2. 12. 피고에게 지급한 47,000,000원은 망인이 소비임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맡겨 놓은 금액이고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47,000,000원의 보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보관금 채권을 단독 상속한 원고는 2022.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로서 위

소비임치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금전을 피고에게 보관(소비임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나아가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은 임치관계가 종료하면 그 위탁받은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93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은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지급이 임치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비임치의 의사로 피고에게 위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돌보며 망인을 위한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에 사용할 것을 전제 내지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 2. 5. 이혼을 하고 단신으로 2018. 2. 13. 피고와 약 4km 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2019. 6. 5. 피고와 약 2.6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망인은 당시 병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였는데 언니인 피고에 의지하여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18. 2. 6. 8,000,000원, 2018. 2. 12. 59,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중 20,000,000원을 망인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망인의 거주지를 위해 위 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본인을 돌보는 데 써 달라고 하며 위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는 망인을 위한 치료비, 장례비를 지출하였고, 망인이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20. 2. 19.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2. 25.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18. 2. 12. 47,000,000원, 사망보험금으로 138,001,963원을 증여받았다. 위 2018. 2. 12.자 증여금 47,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할 때 48,479,961원¹⁾ 인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는 186,481,924원(= 48,479,961원 + 138,001,963원)이다. 나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2,352,740원과 위 피고에 대한 증여액의 합계인 188,834,664원(= 186,481,924원 + 2,352,740원)인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액은 94,417,332원(= 188,834,664원 × 유류분율 1/2)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순상속액 2,352,740원을 뺀 94,064,592원(= 유류분액 94,417,332원 - 원고의 순상속액 2,352,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중 일부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액 : 2,352,740원

2)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 2018. 2. 12.자 47,000,000원

(1) 위 47,000,000원이 피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위한 병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에 사용할 것을 전제 내지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3) 그러나 설령 망인과 피고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위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목적물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을 제3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증여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합계 14,539,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20. 2. 19.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2. 25.까지 망인을 간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372일의 간병비를 계산하면 40,920,000원(= 372일 × 1일 간병비 110,000원)에 이른다.

(다) 망인이 피고에게 47,000,000원을 증여하면서 피고에게 제시한 조건 내지 부담은 사실상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돌봐 달라"는 것이다. ① 피고가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망인을 돌본 점, ② 망인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상속개시 당시 소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별도의 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만큼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제시한 부담에는 단순 금전적인 지원 뿐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적, 정서적 지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의 지출내역 내지 간병일수를 엄격히 판단할 때 피고가 망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피고가 증여받은 47,000,000원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48,479,961원에 일부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상응하는 부담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험금 138,001,963원

(1)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정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사망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전적으로 제외한다면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제도를 잠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수익자로서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닐지라도, 이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는 제3자의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한 것(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상 지출에 해당한다)이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라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수익자인 제3자가 취득한 사망보험금을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은 수익자가 취득한 보험금이 아닌 보험료인 점, 제3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제3자가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라는 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 증여 이후 수증자 등이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점(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제3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닌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라고 보아야 한다.

(3)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위해 출연한 보험료의 합계가 20,583,04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소결: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22,935,785원(=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액 2,352,740원 + 망인이 출연한 보험료 20,583,045원)이다.

라. 유류분의 비율(B)

원고가 망인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2이다.

마.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앞에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 비율(B)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 및 여기에서 순상속분액(D)을 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표와 같이 9,115,152원이 된다.

원고	22,935,785원	1/2	11,467,892원	2,352,740원	9,115,152원
----	-------------	-----	-------------	------------	------------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 9,115,1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승환

1) = $47,000,000\text{원} \times 108.1(2021\text{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104.8(2018\text{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2) 원 미만은 버린다.